

# 高麗王朝代 南宋, 金制를 併用한 100余年間의 服飾(A.D. 1142-1224)

同德女子大學 家政學科  
教授 任明美

目 次	
第一章 序 論	第三章 金朝와 교류당시의 高麗服飾
第一節, 研究 目的	制度
第二節, 研究範圍 및 内容	第一節, 睿宗11年 定制
第三節, 研究 方法	第二節, 仁宗18年 定制
第二章 金朝와 高麗와의 관계 考察	第三節, 毅宗朝 詳定制
第一節, 金朝의 歷史文化的 背景	第四章 結論 및 要約
第二節, 金朝와 高麗와의 關係	參考文獻

## I. 序 論

第一節, 研究目的 : 本研究는 高麗王朝 500年의 服飾制度에 관한것을 알아보기위한 研究의 일환으로 高麗王朝와 교류관계에 있었던 金朝와의 관계 및 服飾制度考察을 통해 당시 高麗王朝의 服飾制度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第二節, 研究內容 및 範圍 : 本研究는 高麗王朝와 金朝와 교류당시 高麗의 服飾制度의 部分의 일것을 밝히고자 하는것으로, 高麗王朝服飾全般에 관한 考察은 다음과같이 전개코자하며, 本研究는 그중 네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金朝와 교류당시 高麗服飾 으로, 특히 高麗가 金과 교류하였던 睿宗13年부터 高宗6년까지 116年間사이에 男子法定冠服制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考察하고자 한다.

1. 建國初, 唐制度를 수용한 新羅服制 着用 40餘

年間의 服飾, (A.D. 918-960) (I)

2. 五代, 後周의 服制에 준한 制定服制와 北宋, 遼制를 併用한 200餘年間의 服飾(A.D. 960-1142) (II)

3. 遼敗亡後 仁宗代, 宋使徐兢의 高麗圖經을 通해서 본 服飾制度(A.D. 1122-1142) (III)

4. 毅宗代 詳定制服制와 南宋, 金制를 併用한 100餘年間의 服飾(A.D. 1142-1224) (IV)

    가. 金과 高麗와의 관계考察 및 金의 服飾制度  
    - 與服志 및 文獻記錄상의 服飾研究를 中心으로  
    (IV-1) -

    나. 金과 高麗와의 관계考察 및 金의 服飾制度  
    - 傳世繪畫 및 出土遺物 등을 中心으로(IV-2) -

    다. 金과 高麗와의 관계考察 및 金의 服飾制度  
    - 儀衛服飾을 中心으로(IV-3) -

    라. 金과 교류당시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IV-4) -

5. 金敗亡後, 元 복속기, 100餘年間의 服飾制度 (A.D. 1124–1372) (V)

6. 元敗亡後, 22年間, 明朝服飾 수용服制 (A.D. 1370–1342) (VI)

- 第三節, 研究方法 : 1) 正史類, 總書類, 經書類,  
其他史料  
2) 研究書, 研究論文(中, 日,  
韓, 英書 其他) 等 文獻 中심  
으로 研究考察한다.

## 第二章 金朝와 高麗와의 관계 考察

### 第一節 金朝의 歷史文化的 背景

#### 1. 女眞의 興起

B.C. 9C경, 中國의 東北方에는 '肅慎'族이 居住하였았고, 漢代에는 '挹婁'가 된다. 4C. 중엽에는 '勿吉'이 되었고, 南北朝末頃에는 '靺鞨'이 된다. 唐에 의한 高句麗와 靺鞨諸部의 와해후에는 '渤海'가 되고, 唐末, 宋初, 現蒙吉 遼河上流에서 契丹族의 大國이 일어나 南滿洲를 포괄하였으나, 渤海故地가 '遼'에 포섭되면서 2C. 가량 이지역에는 통일된 王朝가 出現하지 못하고 地域단위의 自治集團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女眞'이라고 하였다. 2C. 가량후 12C.初에 '金'이 되어, 遼를 멸망시키고, 遼의 故地가 金에 포섭되자, 東, 內蒙吉, 華北지역의 中國北半까지 세력이 확대되었다.<sup>1)</sup>

#### 2. 金朝의 歷史文化的 背景

金은 12C初 女眞族이 主體가되어 建立한 王朝로 女眞族外 漢, 渤海, 契丹, 畏等의 民族構成體<sup>2)</sup>로 遼와 北宋을 계승한 이후 119年間 존속하였다.

太祖는 稱帝後 天輔7年(1123), 燕京을 점령하고, 3代熙宗과 4代 海陵在位 26年間(1135–1161) 사이에 國家統治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海陵, 天德

5年(1153), 燕京으로 천도한 후 中央執權統治를 강화하였으며, 이후 元, 明, 清 각 王朝가 燕京을 首都로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다. 5代, 6代 世宗과 章宗在位(1161–1208) 半세紀사이에 金朝는 안정되고 強盛의 頂點에 달하였다. 衛紹王, 複宗, 哀宗在位26年間 사이에 王朝는 쇠퇴해지고, 天興2年(1233 : 高麗, 高宗21年)을 끝으로 金朝는 끝이났다.

### 第二節 金朝와 高麗와의 관계

#### 1. 女眞과 高麗와의 관계

女眞은 高麗史, 遼史, 金史等에서 보면, 암록강女眞, 三十姓女眞, 등으로 보이고, 高麗史에서는, 西, 東, 北, 혹은 三十姓女眞등으로 불렸고, 그후 女眞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東北方滿洲에 살고있는 部族 모두를 통칭하였다.<sup>3)</sup> 이들은 高麗初 太祖代부터 睿宗年間까지 200餘年동안<sup>4)</sup> 東·西, 北女眞, 西北, 東北, 東西女眞, 女眞, 東蕃, 鐵利國, 東黑水, 黑水靺鞨, 女眞靺鞨, 金等으로 個別 또는 무리지어 高麗에 조공하였는데, 그 回數는 무려 431回나 된다<sup>5)</sup>고 하였으나 1年에 평균 2–3회 조공하였으며, 高麗로부터 文物制度에 대한 諸般事 to 배워가고 교환해 갔었다고 볼수있다. 즉 다시말하면, 女眞은 200餘年間 高麗와의 교류관계속에 成熟하고, 金朝建立勢力의 힘을 키웠다고 볼수 있다.

#### 2. 金朝와 高麗와의 관계

高麗(918–1292)와 金(1115–1234)은 高麗16代睿宗(1105–1122)13年부터, 23代高宗6年까지 116年間 교류하였다. 그러나 金朝建立前의 女眞族과는 高麗3代王인 定宗 文明大王3年(948)부터 睿宗12年(1117), 金朝建立時까지 170年間, 통합286年間 교류가 있었다.

高麗에 臣屬하여있던 生女眞이 睿宗10年 國號로 '金'으로하고, 阿骨朵는 稱帝하였다. 이어서 高麗에

1) 任明美, 「中國古代服飾研究」, (I), 서울, 耕春社, 1988, pp.142–145.

2) 宋德金著, 「金代社會生活」, 狹西人民出版社, 1988, p.1.

3) 金渭顯, 「遼金史研究」, 서울, 俗豐出版社, 1986, p.134

4) 睿宗13年 金의 阿骨朵 太祖가 遼를 멸하고, '金'國으로 建國하기까지를 말한다.

5) 金渭顯, (1986), 앞책, p.168.

書翰을 보내 自國을 兄으로 自處하고 兄弟가되어 和好를 이루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睿宗14年, 고려는 金에 書狀을 보냈는데, 書狀에 '金이 高麗땅에서 일어났을 뿐아니라 臣屬하였음을 뜻하는 語句가 있다'하여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仁宗3年에도 高麗는 金에 사신을 보냈으나 '國書가 表文이 아니고 稱臣하지 않았다'고 받아드리지 않았다.

仁宗4年 金은 사신을 보내 勅命하기를, '高麗는 사신을 보내 往來하는데 모두 遼에 대해서 하던 舊制를 따르도록'이라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金은 遼와 달리 과거 高麗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인지 존속기간동안 침공하지 않았으며, 金朝 존속 119年間, 高麗仁宗20年부터 康宗2年까지 60餘年間, 6차례 王을 冊封하고, 高宗11年, 金이 南宋과 손잡은 新興勢力인 蒙古族에 멸망당하자 金의 年號 사용을 中止하였다.<sup>7)</sup>

### 第三章 金朝와 교류당시 高麗服飾

金朝와 外交관계를 갖었던 睿宗13年부터 高宗6年까지 116年間 사이에 高麗는 3회에 걸쳐 法定禮服制를 制定하였다. ①睿宗11年 制定服制, ②仁宗18年 定制, ③毅宗朝 詳定制이다. 비록 國內外的兵火로 인해 소실되고 傳世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制度를 유추하여 再定立하는 것은 高麗王朝 服飾制度 全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이를 교류당시 北宋, 南宋, 金朝의 服飾制度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第一節, 睿宗11年定制

高麗史에 보면, 16代 睿宗(1105–1122)은 처음으로 儀禮局을 두어 禮儀制度一體를 定하였으나 典籍

이 傳하는 바가 없다<sup>8)</sup>고 하였는데, 17代 仁宗元年(1133), 宋使徐兢이 同年6月에 와서 2個月동안 머물며 高麗를 보고간 뒤, 作成한 見聞錄인 〈高麗圖經〉에 보면, '얼마전 戲貢사신이 와서 宋의 조정에서 내리는 十等冠服制를 얻어와 이를 본받아 服制를 定하였다.'<sup>9)</sup>고 하였는데, 여기서, '얼마전'이라고 하는 것과, '睿宗이 禮儀制定局을 두어 禮儀制度를 定하였다'고 한 것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高麗史에서 이를 보면, 仁宗元年條에, '仁宗이 즉위 시 大廟와 九陵에 告하였다',<sup>10)</sup>고 하였는데 이 大廟와 九陵은 睿宗11年, '大廟와 九陵을 新制하였다'<sup>11)</sup>고 되었으나, 仁宗은 睿宗11年에 制定한 大廟와 九陵에 告하였을 것이며, 睿宗11年(1116)은, 遼敗亡 14年前이며, 高麗는 遼가 女眞의 침공을 받아 敗亡의 形勢가 보인다고 하는 報告를 받고, 즉시 遼의 天慶年號 사용을 中止하였던 때<sup>12)</sup>이며, 이와 같은 國際情勢 속에 自主的인 服制制定의 소명의식과 自主性 회복의 필요성에서 儀禮制定의 巨國的인 사업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때는, 女眞이 '金'이라 稱하고, 開國한 2년 뒤이며, 또 이때는 新興勢力인 金과 손을 잡고, 遼를 멸망시켜, 遼로부터 받은 굴욕을 씻고자, 발분하고 있던 宋은 徽宗의 政和年間(1111–1117)으로, 宋徽宗은 政和3年(1113), 制度를 整備하여,<sup>13)</sup> 몰락해가는 遼에 대해 自主性回復의 선언을 하고, 遼에 稱臣하고 傳統的인 祭服制 實行이 不可하였던 상황에서, 制度를 定立하게 된 때이기도 하였다.

政和3年은 睿宗이 儀禮局을 두어 儀禮制度를 詳定하기 3年前으로, 당시 北宋은 북쪽으로 遼, 金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西南쪽으로는 西夏가 버티고 있었던 상황에서, 徽宗治下 北宋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高麗의 지지가 필요하였던 때였으므로

6) 高麗史, 卷15, 世家, 志第15, 仁宗1, 仁宗4年

7) 高麗史, 卷87, 志第2, 年表2

8) 高麗史, 卷59, 志第13, 禮1

9) 高麗圖經, (1978), 亞細亞文化社. pp.2–7

10) 高麗史, 卷14, 世家, 志第15, 仁宗1

11) 同註⑧

12) 高麗史, 卷14, 世家, 志第14, 睿宗3.

13) 宋史, 卷152, 志第105, 與服4

高麗에 대해 지극히 호의적이었고, 高麗와의 교빙관  
싸를 遼와 대등한 위치에 두었던 때이다.<sup>14)</sup>

高麗는 비록 北宋과 遼와의 外交관계에서 遼의  
年號를 사용하고 冊封을 받고 있었으나, 內的으로는  
경멸하고 있었으며, 宋의 文物制度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睿宗代 制定 禮制는 北宋 政和年間  
의 制度를 '본받은'制度였을 것이며, 이로보아,  
<高麗圖經>에서 '얼마전'이라고 한 것은 睿宗11年이  
며, <高麗圖經>作成 당시로 보면 '10年前'으로, 이에  
소실되고 傳하는 바는 비록 없지만, 睿宗年間 制定를  
알아보기 위하여, 政和2年定制 羣臣祭服制를 宋史  
與服志를 通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正一品에 해당하는, 親祠大禮使, 亞獻, 終獻,  
太宰, 左丞, 每獻大祠宰臣, 親王, 執政官, 郡王이  
初獻時差用하는 正一品服은 다음과 같다.

② 冠帽 : 九旒冕을 着用하는데 金塗金稜으로  
만들고, 額花가 있고 犀簪導를 끓는다.

③ 衣服 : · 上衣는 青色이며 그림으로 降龍紋을  
나타낸다.

· 下裳은 朱色裳으로 四章을 둔다.

· 蔽膝은 朱色이다.

· 白羅로 만든 中單이 있고, 大帶, 金塗  
銀花帶, 金塗銀裝玉佩를 한다. 青綠問玉  
環이 있는 錦綬를 한다. 朱襪에 履를  
着用한다.

④ 從一品에 해당하는 親祠吏部, 戸部, 禮部, 兵  
部, 工部尚書, 太祖眞受幣爵, 奉幣爵宗室, 每獻大祠  
捧俎官, 大祠 中祠 初獻官服은 다음과 같다.

⑤ 冠帽 : 九旒冕을 着用하는데, 金塗金稜으로  
하되 額花가 없다. 犀簪導를 끓는다.

⑥ 衣服 : 衣, 裳, 蔽膝은 正一品服과 같다. 中單은  
白綾으로 만들고, 銀環이 있는 紅錦綬를 한다. 金塗  
銀佩를 한다.

⑦ 正二品에 해당하는 親祠吏部侍郎, 殿中監,  
大司樂, 光祿卿, 讀冊官 : 太廟屬姐贊進飲福宗室,  
七祀配享功亞分獻官, 每獻大祀, 謂用宮架者, 大司樂  
大司 中司 亞終獻, 大祠禮官, 小祠獻官, 朔祭太常卿

服은 다음과 같다.

⑧ 冠帽 : 七旒冕에 角簪을 한다.

⑨ 衣服 : 青衣에 降龍紋이 없으며 나머지는 從一  
品服과 같다.

⑩ 正三品에 해당하는 親祠舉冊官, 大樂令, 光祿  
丞, 奉俎饌遷亞官, 分獻官, 太廟奉贊盤香燈, 安奉神  
主, 奉毛血槃, 每獻祭祠大樂令, 大中祠分獻官等이  
着用한다.

⑪ 冠帽 : 五旒冕

⑫ 衣服 : 早綾綬, 銅環, 金塗銅華帶, 佩玉하며,  
나머지는 二品服과 같다.

⑬ 監祭御史가 着用하는 服은 다음과 같다.

衣服으로 紫檀絰衣를 着用하는 외에 冠帽 및 修飾  
品이 正三品 服과 같다.

⑭ 四品以下 奉禮協律郎, 郊社令, 太祝太官令,  
進搏漆官, 供七祀獻官, 執爵 等이 着用한다.

⑮ 冠帽 : 無旒冕

⑯ 衣服 : 素青衣, 朱裳, 蔽膝을 着用하고, 佩綬하  
지 않는다. 나머지는 三品服과 같다.

高麗는 이상과 같은 睿宗11年, 北宋 政和年間  
定制인, 王服의 경우, 北宋, 政和年間制인 正一品  
服, 親王禮制를 채택한 九旒冕九章服의 服制를  
定制하여, 仁宗18年 定制하여 制度를 바꾸기까지  
약 30餘年間 着用하였으리라 추정한다.

## 第二節, 仁宗 18年定制

高麗17代王 仁宗(1125~1146)代初期는 교류관계  
에 있었던 宋, 遼, 金諸國의 政勢變化가 극심하였던  
시기이다. 仁宗元年, 遼에 보낸사신이 女眞이 세운  
金의 세력에 밀려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 왔고,<sup>15)</sup>  
仁宗 3년에는 200餘年間 교류해오던 遼가 金에  
멸망당하였다. 同王5년에는 宋에 보낸 사신이 金兵  
에 의해 길이 막히므로 되돌아 왔고,<sup>16)</sup> 北宋이, 遼를  
멸하는데 힘을 같이 하였던 金에 의해 멸망 당하고  
南宋이 일어났다. 高宗 즉위 詔와 함께 宋의 國信使  
가 가져온 國信禮物과 牒에 의하면, '高麗에서 宋에

14) 高麗圖經, (1978), 앞책, pp.2~7.

15) 高麗史, 卷15, 世家, 志第15, 仁宗1, 仁宗元年

16) 高麗史, 卷15, 世家, 志第15, 仁宗1, 仁宗5年

보내는 衣帶나 花酒등을 中止하여 달라고<sup>17)</sup> 하였다. 그래도 高麗가 계속해서 使臣을 보내자 8년,再次, '高麗에서 使臣보내는것을 멈추어 달라'<sup>18)</sup>고 하였다. 이는 高麗와 宋과의 밀착관계를 두려워하는 金의 비위를 견드리지 않고자함이었다. 仁宗은 즉위후 17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이와같은 주변諸國의 상황변화로인해 宋, 遼, 金어느나라로 부터도 册封을 받지못하였다. 즉, 仁宗즉위년은, 그동안 高麗에 대해 册封과 冠服賜與를 해왔던 遼의 敗亡 3年前이었으며, 쇠퇴하여가는 遼로서는 16代王睿宗의 册封을 끝으로 高麗에 대해 王冊封의 여유를 가질수가 없었으며, 宋은 새로 建國한 金에 의해 徽宗(1100~1125)과 欽宗(1125~1127), 兩帝이하 皇室家族등이 金地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새로 建國한 金은 天輔5年,(1122) 儀禮制度와 服色制度를 定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女眞族의 服制를 기본으로하고, 法度制度는 遼制를 制度化하였으며, 2代 太宗 4~7年(開國 12~15年사이 : 1126~1133) 사이 北宋을 멸하고, 北宋地 進入後, 宋朝의 臣民들에게 金式髡髮을 命하였으며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死刑에 처하였다. 接戰中이 있을 뿐만아니라, 金朝自體역시 建國前統一된 政權이나 制度化된 制度를 갖고있었던것도 아니었을뿐아니라 征服者로서 漢式法服制 사용역시 수용할수없는 상황속에서 高麗에 대해 冠服制 賦與나 册封등이 不可하였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지않다. 이와같은 상황설정의 토대위에서 보면 仁宗은 즉위시 睿宗11年定制인 九旒冕 九章服制를 着用하였을 것이고, 龍紋은 降龍의 政和年間 正一品服制를 着用하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王은 同王18年 服制를 制定하는데, 그 동기에대해, '睿宗代 詳定禮制는 仁宗4年(1126) 李資鑑이 宮闈을 불태울때 燒失되었거나 10년뒤 妙清이 일으킨 亂등으로 (仁宗14年 : 1140), 上記한 國內外的 十數年來의 혼란으로 紋籍이 散失되어 制度상의 갈피를 잡을수없게 되자 이를 바로잡기위해 仁宗이 詔를내려 制度를 整備한것으로 보고있다.<sup>19)</sup> 어쨌거나 17年, 王은 詔를 내려 櫛禮服章의 制度를 制定하게 하였고 <表1>과 같다.

<表1> 仁宗 18年 定制 祭禮服制

着用者身分	服制
王	九旒冕 七章服
一品, 亞獻以下 侍中 以上	七旒冕 五章服
二品, 大尚卿 以下 五祀獻官 以上	五旒冕 三章服
三品, 功臣獻官, 通事舍人, 監察御史 以下	無旒冕 無章服

즉, ① 王服 : 九旒冕, 七章服

② 百官服 : ○ 一品服은 亞獻以下 侍中 이상의 6人이 입는데 七旒冕, 五章服

○ 二品服은 太常卿 以下 五祀獻 이상의 1 5人이 입는데 五旒冕 三章服, 三品服은 功臣獻官, 通事舍人, 監察御史 4人이 입는데 無旒冕이다.

이상과 같이 仁宗18年 定한 櫛禮服章의 制度는

王이 九旒冕 七章服, 百官一品이 七旒冕 五章服, 二品이 五旒冕 三章, 三品이 無旒冕의 四等服制이다. 이를 주변 諸國의 品階別 章紋과 比較하여 보면 <表2>와 같다.

여기서 밝히고 지나고자 하는것은 王服에서, 왜 高麗는 종전의 先王時 遼朝賜與 九旒冕, 九章服制나 睿宗代 詳定 九旒冕, 九章服制가 아니고 '九旒冕 七章服制'가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

17) 上同

18) 高麗史, 卷15, 世家, 志第15, 仁宗1, 仁宗8年

19) 朴貞秀, 高麗前期 官服制研究, 東亞大學校 博物館, 考古歷史學志, 創刊號, 1985. p.187.

〈表2〉 高麗 仁宗18年定制와 주변諸國冕服, 章紋 品階別 比較表

王朝別 旒數와 章紋	高麗	唐	北宋	南宋	金	비고
九旒 九章		袞冕(一品)*	· 親王,* 正一品, 群王 從一品*		皇太子, 親王*	* 龍紋降下
九旒 七章	王				一品	
八旒 七章		驚冕(二品)		驚冕**		** 無龍
七旒 七章			正二品***			***無降龍
七旒 五章	一品	毳冕(三品)			三品	
六旒 五章				毳冕		
五旒 五章			正三品			
五旒 三章	三品				五品	
五旒 一章		玄冕(五品)				
四旒 三章				稀冕		
無旒 無章	五品	(六品以下九品)	(正,四品)	玄冕	(七品)	
典據	· 高麗史卷15, 世家, 卷第15, 仁宗2, · 仁宗18年定制	· 舊唐書, 卷45, 志第25, 與服 · 開元禮制	· 宋史, 卷152, 志第105, 與服4 · 政和年間定制	· 左同 · 中興後紹 興4年 定制	· 金史, 卷43 , 志第24, 與服 中	( )은 品에 대한 기록이 없어 本人이 추정

당시 교류관계에 있었던 金과 南宋<sup>20)</sup>의 服制를 考察하고자 하며 먼저 南宋의 服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南宋의 高宗은(1127-1162) 즉위후, 北宋의 政和年間 制度대로 '省服 祭服制度인 九旒, 七旒, 五旒, 玄冕無旒의 四等服制를 사용하고 있었다.<sup>21)</sup> 그러나 同帝, 紹興(1131-1162)4년, 國子監 丞王普의 '士의 三公은, 八命制인 驚冕, 八旒七章制이고, 孤卿 六命의 毳冕은 六旒五章이고, 大夫四命은 稀冕四旒三章이고, 上士三命은 玄冕三旒이고, 中士兩命은 玄冕二旒, 下士一命은 玄冕無旒에 無章의 諸經傳에 근거한 祭服制를 채택하여 等位를 가렸으면

한다<sup>22)</sup>고 하는 秦言에 따라, ① 驚冕, 八旒七章服, ② 毳冕 六旒, 五章服 ③稀冕, 四旒三章, ④ 玄冕無旒, 無章의 四等服制로 改正하였다.<sup>23)</sup> 그런데, 南宋이 이와같은 七, 五, 三의 陰數制의 服制改定을 하게 되는 背景의 側面을 생각해보면, 仁宗6年(1128), 金은 北宋을 멸하고, 高麗에 '對宋勝掠의 國書'를 보내왔으며,<sup>24)</sup> 宋은 金에 儀禮法物一體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儀禮制度를 再制定 整備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宋의 禮物等을 인수한 金朝는 太宗이 天會4-7年사이(1126-1133), 朝庭의 祭服制를 漢式으로 制定<sup>25)</sup>할 당시, 金의 漢族官僚는 北宋의 政和年間 八, 六, 四의 陽數制의 冠服制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20) 高麗는 南宋과는 仁宗6年(建炎1年)부터 明宗22年(1192:南宋 紹興3年)까지 65年間 교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正式外交관계라기보다 商人의 往來를 통한 문화교류를 中心으로 한 교류관계였다.

21) 宋史, 卷152, 志第105, 與服4, 「中興之後, 省九旒……」

22) 宋史, 卷152, 志第105, 與服4, 「紹興四年五月……」

23) 宋史, 卷152, 志第105, 與服4, 「故其節以八 以六 以四徒陰數也」

24) 高麗史, 卷15, 世家, 志第15, 仁宗1, 仁宗5年

25)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中

것<sup>26)</sup>이므로 南宋은 당시 金에 대해 稱臣한 상황에서 金朝와 同一服制의 重複을 피하고, 金朝에 대해 삼가 等級을 낮추는 의미의 背景的 근거에서 陰數冕服制를 채택하게 되었던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南宋의 服制가 이와같이 改定된 상황에서, 仁宗 16年, 宋商人이 牒을 갖어와 金에 불잡혀가 있던 徽宗皇帝와 寧德皇后가 金에서 崩하였다고 하는 報告에 接하였고,<sup>27)</sup> 上國으로 간주하고있는 宋도 章紋의 等級을 낮추어 服制를 制定한 상황에서, 氣勢가 상승일로에있는 金朝와 高麗가 同一品階, 同一服制 사용은 相互, 服制상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수도있고, 不敬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을터이므로, 이에 高麗가 '九旒冕七章服'으로 改定服制를 채택한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2年 뒤 仁宗20年, 金은 高麗에 대해 王을 册封, 九旒冠一頂, 九章服一副, 玉圭一面, 金印一面, 玉冊一副, 象輅一, 馬四匹을 賜하고 別途로 衣對匹段, 器用약간, 鞍轡馬三匹, 散馬四匹을 보냈다.<sup>28)</sup> 仁宗20年(1145)은, 金의 3代 熙宗(1135~48) 年間, 皇統(1141~1148) 4年으로 同帝, 天眷(1138~1140)3年이며, 이에, 北宋初期의 制度를 皇帝冕服이하 百官의 朝, 祭服制에 적용실시하였으므로<sup>29)</sup> 당시의 法服制에 준해 賜與하였을 터인데, 金史與服志에는 皇太子 祭服制의 九旒冕九

章服制만있고 親王禮制는 볼수없으나, 賜與物目에 포함된, '象輅'制는 北宋의 親王禮制<sup>30)</sup>로 金은 高麗에 대해 親王禮우를 한것이다. 이는 高麗가 스스로 仁宗18年 王服으로 九旒冕七章服으로 降等한것에 비하면 상승우대제였다. 金朝의 九旒冕九章服制를 皇太子 祭服制를 通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④ 冠帽 : 九旒는 白珠로하고, 紅絲로 組織을 하였다.

④ 衣服 : 青衣에 朱裳을 着用하였다. 山龍, 華蟲, 火, 宗彝, 五章은 衣에있고, 藩, 粉米, 蘭, 畏, 四章은 裳에 있다. 白紗中單은 青色, 標, 禪, 裙를 하였다. 革帶는 塗金銀鉤環을 하였다. 蔽膝을 裳色과 같은 朱色이고, 火, 山, 二章을 두었다. 瑰玉雙佩하였다. 四采織成 大綬에는 玉環3개를 하였다. 白襪, 朱舄을 着用하였고 舄에는 金塗銀鉤를 하였다.

### 第三節, 殿宗朝 詳定制

仁宗20年以後, 金은 60年동안(金開國 28年(1142)부터, 敗亡 22年(1213)前까지) 高麗에 대해 王이 바뀔때마다 册封禮를 집행하여 王權을 인준하였는데 이를보면 다음 <表3>과 같다.

<表3> 金朝 對 高麗 冊封一覽表

王名	西紀	金年號	冊封	賜與品目
仁宗(20年)	1142年	熙宗皇統2年	○	九旒冕冠, 九章服, 玉圭, 金印, 王冊, 象輅, 馬等
殿宗(2年)	1148	熙宗皇統8年	○	
明宗(2年)	1172	世宗大定12年	○	九旒冕冠, 九章服, 玉圭, 金印, 王冊, 衣五對, 細衣著, 二百匹段, 細弓等
神宗(2年)	1199	章宗承安4年	○	車, 服, 金印, 匹段, 弓箭, 鞍馬
熙宗(2年)	1206	章宗泰和6年	○	
康宗(2年)	1213	宣宗貞祐1年	○	車, 金印, 匹段, 弓箭, 鞍馬

<表3>에 보면, 仁宗20年 冊封後, 6年 뒤 殿宗冊封

時에는 王을 冊封만 하였을뿐 冠服을 사여한 기록

26) 宋史, 卷152, 志第105, 與服中

27) 高麗史, 卷16, 世家, 卷16, 仁宗2, 仁宗16年

28)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中

29) 高麗史, 卷7, 世家 卷17. 仁宗3, 仁宗20年

30) 宋史, 卷151, 志第104, 與服2.

은 없다. 그런데 高麗毅宗初는 교류 관계에 있던  
金의 情勢變化가 극심하였던 때로, 同王4年, 金의  
平章政事が 임금을 죽이고, 自立하여 '天德'이라  
開元하였는데, 이어가 海陵王이며, 毅宗9년에는  
年號를 '天德'에서 '貞元'으로 바꾸고,一年 뒤에는  
다시 '正陵'으로 바꾸었으며, 毅宗15년에는 金帝가  
폐살되었다.<sup>31)</sup>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6년 뒤 즉위한 毅宗冊封時 王에 대한 衣服사여는  
없었는데, 同王代에는 王服으로 ① 仁宗18年 九旒冕  
七章服制 ② 仁宗20年 金朝賜與 九旒冕 九章服制  
③ 史의 記錄은 不在하나 實際상으로는 金朝賜與가  
있었다면 賜與服制, 3者가 共存하였을 것이다며, 百官  
의 制度로는 仁宗18年定制가 사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볼 때, 金朝의 情勢變化와 國內의 服制 혼란은,  
毅宗朝 詳定禮制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  
다.

高麗史 序文에 보면, '毅宗代 平章事 崔允儀가  
租宗의 憲章을 모으고 唐制를 참작하여 禮制를

詳定<sup>32)</sup>하였다고 되 있다. 毅宗몇년에 禮制詳定의  
詔를 내렸는지 記錄에는 없으나,<sup>33)</sup> 崔允儀傳에  
'允儀가 詔를 받들어 詳定禮 五十卷을 撰'하였다라는  
기록<sup>34)</sup>이 있어 이를 분명하게 한다. 이때 王의 冕  
服, 與輅, 儀衛, 齒簿制度일체와 百官의 冠服制까지  
制度一體가 완비되었으나 散失되고, 現傳하는 것은  
史編, 詳定禮, 周官六翼, 式目編錄, 蕃國禮儀等을  
참고로 하여 禮志를 五禮로 나누어 朝鮮王朝 世宗代  
禮曹判書 鄭麟趾가 教修하여 만든 것이다.<sup>35)</sup> 비록  
散失되고 現傳하지는 않지만 毅宗朝 詳定禮制는  
金과 교류 당시뿐 아니라 元복속기에도, 恭愍王19  
年 明으로부터 明制를 賜與받아 수용하기 전까지  
國俗을 이루고, 高麗定制 祭服의 根幹이 되었다.  
다음은 비록 毅宗朝 詳定 당시의 禮制는 아닐지라도  
古今의 諸禮를 참작하여 朝鮮朝初期 詳定한 것이므로  
大同少異하였으리라 보고 이를 中心으로 紙面관  
계상 祭, 朝, 公服制만 要約하여 王以後 百官의 定制  
冠服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4〉 毅宗朝 詳定 祭服制

着用者身分	服制
王	九旒冕 九章服
一品	七旒冕 七章服
二品	五旒冕 五章服
三品	五旒冕 三章服 三旒冕 一章服 無旒冕 無章服

朝服의 경우, 王은 蘭黃袍와 披黃衣를 着用하였고, 百官은 公服으로 紫, 排, 綠 三色公服制로 하고, 修飾品으로 等差를 가렸다. 즉,  
① 文官, 四品以上 紫衫, 紅程, 金魚를 着用한다.  
常參, 六品以上 紺衫, 紅程, 銀魚를 着用한다.  
常參, 九品以上 綠衫, 紅程, 銀魚를 着用한다.

② 武臣은 모두 紫衫에 無佩이다.

③ 公, 侯, 伯은 通犀帶와 金玉班犀帶에 佩魚하지 않는다.

④ 宰臣과 枢密은 金玉班犀帶와 方圓毬路帶를 한다. 文官의 八座, 左右常侍, 御史大夫, 翰林學士, 丞旨 3品以上과 武官上將軍이상은 金班犀帶를 사용한다. 文武三品과 侍臣, 給舍中丞이상은 斑犀金塗銀

31) 高麗史, 卷8, 世家, 卷第18, 毅宗2, 毅宗15年

32) 高麗史, 卷59, 志第13, 禮1

33) 崔允儀傳

34) 「允儀… 譖奉詔, 撰古今詳定禮 五十卷……」

35) 高麗史, 第59, 志第13, 禮1.

帶를 사용하고, 文武四品以下와 常參官은 犀帶 사용을 不許하였다.

⑤ 兩府 및 丞制와 文武三品以上과 正四品知閣門, 內侍行頭員 및 茶房侍郎이상은 早衫에 紅程을 하였다.

⑥ 笏은 紫衫, 袱衫着用者は 象으로하고, 緑衫着用者は 木으로하고 그 製式은 위를 각고 아래는 각이지게하였다.

또한 金은 殿宗2年 王冊封 24년 뒤 明宗2年 王冊封時에도 다음과 같은 九旒冕一頂, 九章服一副, 王圭一面, 玉冊一副, 金印一面, 施細象輅一, 馬四匹외에 衣五對, 繩衣著二百匹段, 細弓一張, 鷲羽大箭二十八雙, 鞍轡二匹, 散馬七匹등을 賜與하였다.<sup>36)</sup>

明宗2年은 金의 5代世宗, 大定2年(1162)으로, 世宗은 南宋을 다시쳐 稱臣하게하고 貢物量을 늘렸으며 再次 金朝百官의 服制를 부분改定하였다. 이에 앞서 金4代 海陵王 皇統7年(1148), 太常寺의 秦言<sup>37)</sup>에 따라 '九旒冕九章服이외 章紋中 龍紋은 降龍으로 나타냈고, 一品服은, 九旒冕이외 章紋을 七章服으로하여 制度를 바꾸었고, 明宗2年 金帝(大宗2年)는, 前王 熙宗皇統7年(1148)의 制度로 바꾸었고, 明宗2年 金帝(大宗2年)는 前王 熙宗皇統7年(1148)의 定制에 따르도록 詔<sup>38)</sup>를 내려 摄官은 朝服을, 散官은 公服을, 皇太子는 亞獻時에 衰冕服을 祭服으로 착용하도록<sup>39)</sup> 한바 있으므로, 明宗2年 賜與한 金朝의 九族冕九章服制는 仁宗20年 賜與服制와 同制이되 章紋中 '龍紋을 降龍으로 畵로 紋飾을 나타낸' 九章服制이다. 이후에도 金은 高麗에 대해 新王즉위시 神宗<sup>40)</sup>, 熙宗<sup>41)</sup> 康宗<sup>42)</sup>代에도 王을 冊封하고 '車, 服, 金印, 匹段, 弓箭, 鞍馬等을

賜與하였는데, 神宗代 賜與服에는 '九旒冕九章服'의 名記없이 단순히 '車, 服'으로 記錄하고 있으나, 神宗2年은 金의 章宗丞安4年(1206)으로 章宗(1189~1208)은 南宋을 다시쳐, 宋의 故禮器物등을 압수한후, 唐, 宋의 典禮를 참작하여 詳定所를 개설하고, 明昌(1189~1208)初에 400卷에 달하는 '金策修雜錄'을 편찬하고 禮官의 請에 의해 漢, 唐制를 참작하여 服制를 定하였다.<sup>43)</sup> 그러나 衰冕服制는 宋代制度를 그대로 따랐다 하였으니, 神宗代 賜與服制도 親王禮에 준한 九旒冕 九章服制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즉, 康宗2年에도 金은 王冊封時 「車, 服, 金印, 匹綬, 弓箭, 鞍馬」등을 賜與하여, 九旒冕九章服에 대한 名記는 없으나 '冊'에 이르기를, 「車服九命에 加하고 그에 알맞는 禮章을 내린다」<sup>44)</sup>하였으니, 이는 親王禮制의 九旒冕九章服制이며, 또한 '車'로 내린 「'象輅'의 높이가十九尺인데, 廣化門의 높이가 겨우十五尺밖에 안되어 들어갈수가 없어서, 깍아서 들어기를 請하였더니 金使가 不可타하여 문지방 아래를 과내고, 象輅頂上의 三輪을 떼어내고야 끌어들였다」<sup>45)</sup>하였으니, '象輅'는 金이 大定11年 택한北宋 政和年間定制에 의거하여 보면, 親王禮制<sup>46)</sup>로 이에서 더욱 명백하다고 하겠다.

#### 第四章 結論 및 要約

① 高麗와 金은 高麗16代王 睿宗13年부터 23代高宗6년까지 116年間 교류하였다. 그러나 金朝建立前, 高麗에 臣屬하여있던 '女眞族'과는 渤海별망후 高麗3代王인 定宗3年(948)부터 睿宗12年 金朝建立

36) 高麗史 卷19, 世家 卷19, 明宗1, 明宗2年

37)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中, 「凡行事…培位官, 淮古典當服衣冕 九章 畵降龍……」

38)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中

39)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中

40) 高麗史, 卷21, 世家, 志第21, 神宗1, 神宗2年.

41) 高麗史, 卷21, 世家, 志第21, 熙宗1, 熙宗2年.

42) 高麗史, 卷21, 世家, 志第21, 康宗1, 康宗2年.

43) 金史, 志第24, 與服中

44) 高麗史, 卷21, 世家, 卷第21, 康宗元年

45) 上同

46) 宋史, 卷150, 志第103, 與服2; 金史, 卷43, 志第24, 與服上

時까지 170年間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金'을 세운 '女眞族'과는 286年間 교류하였다.

② 高麗는 遼의 쇠퇴소식을 듣고, 自主的으로 禮儀制를 新定하는데, 北宋 徽宗年間定制에 입각하여 制定한, 睿宗11年定制인 王服, 九旒冕九章服制를 기준으로한 冠服定制를 遼敗亡後, 金朝建立初期, 교류당시에는 仁宗18年 再詳定하기까지 약30年間 着用하였다.

③ 仁宗은 즉위후 17年동안 遼와 北宋멸망, 金과 南宋建國등의 소용돌이치는 情勢變化속에 어느나라부터는 冊封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國內的으로도 十數年來의 혼란으로 國王18年, 王服의 九旒冕七章服制를 기준으로한 百官의 冠服制를定制하였다.

④ 仁宗20年, 金朝는 自國百官의 服制를 漢式으로部分改定하면서 高麗에 九旒冕九章服制의 親王服制에 준한 冊封禮物을 賜與하므로 王服은 九旒冕九章服制, 百官은 國俗의 仁宗18年 定制를 毅宗代定制時까지 대략20餘年間 併用실시하게된다.

⑤ 毅宗이 즉위후, 金朝는 皇帝가 시해되고, 平章事が 稱帝하나 끝이어 피살되는 상황속에서, 金朝의 冊封을 받기는 받았으나, 法服賜與는 없었으며毅宗은, 平章事 崔允儀등에 命하여 王服을 九旒冕九章服制로 기준한 百官의 冠服制를 再詳定하게한다. 그러나 現存하는 高麗毅宗代 詳定服制는 朝鮮王朝 世宗代 諸典禮를 참조하여 鄭麟趾가 편찬한것으로, 비록 당시에 制定制와 同一制度가 아닐지라도, 大差없이 大同少異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비록 散失되어 傳世되는 바 없지만, 毅宗朝詳定 冠服制는 以後 高麗諸禮 法定冠服制의 根幹이 되었고, 元末, 恭愍王19年, 明朝로부터 冠服制를 賜與받아 新定하기까지 通用法服制였다.

⑥ 高麗는 金과 교류기간 116年동안, 仁宗20年(金開國28年(1142)부터 敗亡22年(1213)前까지) 이후 康宗 2년까지 60年동안 王이 바뀔때마다 冊封禮를 통해 九旒冕九章服制의 金朝 親王禮服制를 賜與받는다. 그러나 上衣 五章紋中 龍紋는 '降龍紋'이며 畫로 紋飾하였다. 王은 비록 金朝 賜與服制를 着用하였을지라도, 百官은 毅宗朝 詳定服制를 着用하였다.

## 参考文獻

### 〈國內書〉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國譯, 高麗圖經」, 서울, 1977.
-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譯註, 高麗史」 서울, 1982.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國譯, 高麗史節要」 서울, 1977.
- 金英淑 編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上古, 高麗篇」 서울, 東洋服飾研究院, 1985.
- 譯民社, 「世界史年表」, 서울, 1984.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教文社, 1984.
- 金渭顯, 「遼金史研究」, 서울, 裕豐出版社, 1986.
- 任明美, 「中國古代服飾研究, (I)」, 서울, 耕春社, 1988.

### 〈國內論文〉

- 朴貞秀, 「高麗前期官服制研究」, 考古史學志, 創刊號, 1985.
- 李善熙, 「祭服의起源과 變遷에 관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2.
- 任明美,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金과 高麗와의 관계고찰 및 金의 服飾制度—  
—與服志 및 문헌기록상의 服飾制度를 中心으로  
(IV-1)  
同德女子大學校 論叢, 第22輯, 1992. 3
-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  
—金과 高麗와의 관계 고찰 및 金의 服飾制度—  
—傳世繪畫, 出土 遺物을 中心으로— (IV-2)  
同德女子大學校 論叢, 第22輯, 1992. 3.

### 〈中國書〉

- 「金史」,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7.
- 「宋史」,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7.

1992年 5月 59

- 「舊唐書」，서울，景仁文化社，影印本，1977.
-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서울，亞細亞文化社，影印本，1981.
- 宋德金著，「金代社會生活」，陝西人民出版社，1988.
- 陳迷主編，「遼金史論集」，上海：古籍出版社，1987.